



제301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4차 자치행정위원회

**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**

[원주영 의원 대표발의]

**검 토 보 고 서**

2024. 3. 13.

**자치행정위원회**

#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원주영 의원 등 열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 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시 아동·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과 범죄 피해,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안심귀가 환경 조성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, 취약지역의 선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주요 사업 내용과 지역별 실태 조사, 안전시설물 점검(안 제5조~제7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, 관련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시민안전관
- 라. 입법예고 : 2024. 3. 7. ~ 3. 12.(6일간) /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동기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불안요소에 대비하고, 남양주 시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,

주요 내용은 실태조사를 통한 우리시 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·청소년과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귀갓길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되며,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**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**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**☑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**

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,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·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설치,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.
2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,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

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보행정책의 수립·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.

4.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·정비·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·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제5조(사업추진)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제1호 : 안심귀가도우미 운영
  - 제2호 : 안전시설물 설치
  - 제3호 :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 - 제4호 :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활동실적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 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현재 제5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에 따른 수당,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,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 등 관련된 예산 수반 사항을 추계할 수 없기에 이를 미첨부함

### 4. 작성자

- 시민안전관 이명구